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심상렬(Shim, Sang-Ryul)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주저자)

소단(Shao, Dan)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주이화(Joo, E-Wha)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자율준수제도의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한일 자율준수제도 현황 및 비교	Abstract
IV.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 방안	

국문초록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일 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량살상무기(WMD), 상황허가(Catch-all) 제도

* 본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1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I. 서론

9.11 테러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기구의 협약을 통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물품 거래의 주체인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¹⁾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Catch-all(상항허가)²⁾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Catch-all 규제는 수출품목 자체가 아니라 수출거래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의 확인이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때 수출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래 리스크의 예방 수단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일부 기업만이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말까지 148개 기업³⁾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았다.

수출은 물론 수입에 있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일 수입의존적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일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하여 직접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상품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⁴⁾ 이에 반해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많은 중국과는 달리 전자제품이나 IT 관련 품목 및 정밀기계, 생화학제품 등 전략물자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 비중이

1) 일본과 미국에서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와 EMCP(Export Management & Compliance Program)로 각각 불리는 CP(Compliance Program)에 대해 국내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체계, 자율준수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율준수제도로 지칭한다.

2) Catch-all 제도란 수출국정부나 수입업자가 수입업자의 무기개발 의도를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당해 수출품이 WMD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대상품목이 아닌 물자라도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물자의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이다.

3)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자료, <http://www.yestrade.go.kr>(2011.11.25 방문)

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별 대일무역수지와 시사점”, 일본지식리포트, 2011, pp.2-4.

높은 한국과도 비슷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Catch-all 규제 도입, 수출자 등 준수기준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일본의 모범적인 제도 운영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수출통제제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뒤를 잇는 수출통제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 자율준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 자율준수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 및 평가하고, 제 III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제 IV 장에서는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 V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자율준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자율준수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⁵⁾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여러 회원국들이 문서로 합의한

5)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전략물자 비확산제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내용을 자발적으로 협의,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핵 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가 있으며, 비확산조약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등이 있다. <표 1>은 이러한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종류, 정식명칭, 설립년도 및 참여국수 현황 등을 보여준다.

<표 1>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

구 분		정식 명칭	설립년도	회원국 수
조약/기구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 금지조약)	1970년	189개국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1996년	122개국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138개국
	C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화학무기 금지협약)	1997년	181개국
	BWC (BT 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생물무기 금지협약)	1975년	155개국
수출통제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국그룹)	1978년	45개국
	ZC	Zangger Committee (쟁거위위원회)	1971년	36개국
	AG	Australia Group (호주그룹)	1985년	41개국
	MTC 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87년	34개국
	WA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바세나르협약)	1996년	40개국

자료: 이현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9, p.11.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통제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이들 통제대상 품목의 수출을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규체제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⁶⁾ 다시 말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국제평화 및 안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위험물자의 공급을 체계적

6)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2008, p.353.

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촉진한다는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 방지 및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수출통제의 흐름도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시행되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첨단산업 장비·기술 도입의 원활화 및 수출사고의 사전적 예방 등 주로 통상 산업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을 통제하는 등 외교·안보 차원의 운영 필요성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⁷⁾

2) 자율준수제도(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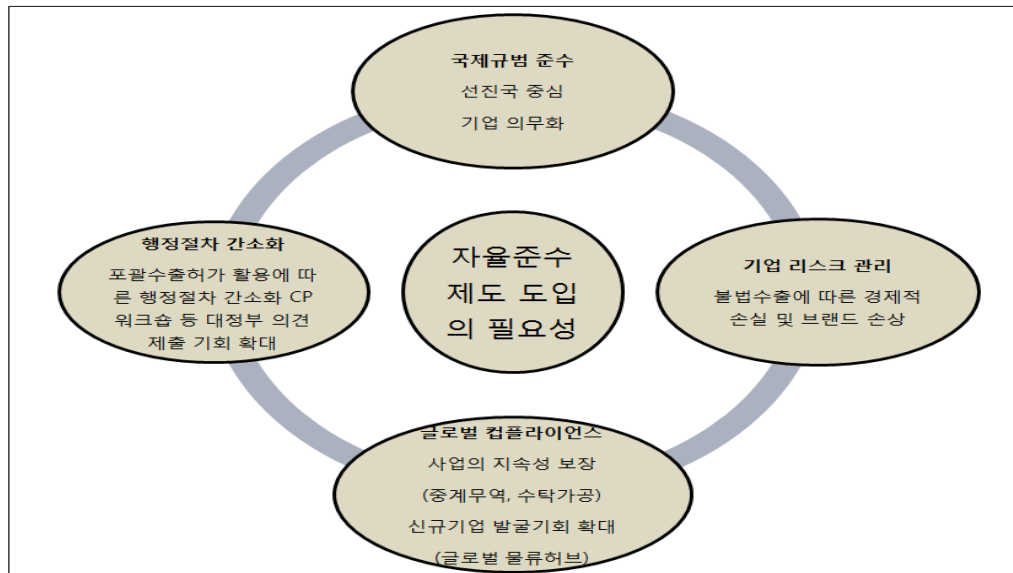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는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수출규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적인 자율준수제도를 갖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 규범으로 공고히 정착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범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경영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자격, 수출허가 간소화, 무역의 날 포상 관련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그림 1] 참조).

가장 큰 혜택은 신속한 수출허가 절차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의 용이성이다.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에 필요한 업무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7)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2005, pp.120-126.



자료: 주형태, “기업의 자율준수체계 구축 지원 방향”, 전략물자 Focus 3호, 2010, p.48.

[그림 1] 자율준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율준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P)와 관련하여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석기(2005)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WMD 수출의 사후적인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진의 인식 전환과 홍보, 교육, 정보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내부 수출통제체계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진·윤남권(2006)⁹⁾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로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출관리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WMD 비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지석(2006)¹⁰⁾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등장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법령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력을 위해 정부, 기업,

8) 이석기,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동향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5.

9) 이상진·윤남권, “전략물자 통제체계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10)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체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정보센터의 관련 당사자가 전략물자 통제제도, 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인증제에 의한 자율준수제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민교(2007)¹¹⁾는 수출통제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국 및 한국의 운영 현황과 사례 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의 이행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통제의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전략물자 관리의 효율적인 수단이자 주요한 경영자원으로 자율준수제도를 평가, 구축 및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지(2008)¹²⁾는 자율준수제도(CP)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출관리방안을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구축의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2005)¹³⁾는 일본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CP)와 일본기업의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전략물자관리와 기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모델이 될 수 있는 자율준수제도 모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거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 및 사례 분석 위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발전과정, 주요내용, 활용현황, 정부지원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한·일 자율준수제도 현황 및 비교

1.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발전 과정

1)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발전 과정

1987년 코콤(COCOM) 위반사건¹⁴⁾을 계기로 일본 통상산업성(MITI)은 1987년 9월 150여개

11) 서민교,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12)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13)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일본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CP) 모델」, 2005.

14) 코콤 위반사건은 규제대상이 되어 있던 공작기계가 일본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소련에 수출되어 구소련

수출 관련 단체에게 자율적인 수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1994년 6월 ‘비확산형 수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관리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 책정과 개정에 대하여’라는 고시를 통해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내부자율준수제도(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와 같은 자율준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¹⁵⁾

2002년 2월 경제산업성(METI)은 기업들이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안전보장무역관리 가이드스’를 제정하여 기업이 수출관리에서 유의해야 하는 중점사항이나 심사 등의 절차 관련 사항 등 기업의 자율준수제도가 갖추어야 할 내용과 수출통제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일본 수출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자율준수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지도하고,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한 이들 기업의 현황을 현지조사 형태로 확인하고 있다.¹⁶⁾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수출관리와 관련된 자율준수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일반포괄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¹⁷⁾

한편 안전보장무역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준수와 더불어 기업에서의 자율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s: CISTEC)¹⁸⁾에서는 2002년 3월부터 수출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 규정의 표준적인 모델로서 자율준수제도 모델(model CP)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개정 외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2008년 10월에 자율준수제도 모델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수출자 등 준수기준’ 고시를 위해 2009년 3월에도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포괄허가 취급 요령’ 및 ‘수출관리 내부규정의 신고 등에 대해’ 고시의 개정에 근거하여 첨부자료 중 해비판정서¹⁹⁾와 심사표의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의 군사력 강화를 초래했다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15)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미국-일본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사례”, 2005, pp.18-19.

16)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와 기업의 대응”, 2005, p.13.

17)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13, 재정리.

18)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수출통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89년 4월 설립된 일본 유일의 안전보장무역 관련 비영리, 비정부기구로서, 정부, 산업, 학계를 연결하는 연계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 해비판정(該非判定)은 화물 등 성령에 세세하게 규정하는 사양과 수출하려는 화물의 사양을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발전 과정

한국은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도입되었다.²⁰⁾ 그러나 본격적인 출발은 2003년 1월 Catch-all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4년 10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제5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설 및 ‘별표11.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 을 신설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²¹⁾

2007년 4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이행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5차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였다. 2008년 8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6차 개정을 통해 포괄허가의 종류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를 다시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차 개정에서는 전략물자 확인, 신고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포괄수출허가 요건 완화 및 허가 면제조항을 추가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2차 개정으로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²²⁾

한편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어떤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6년 2월 개통한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²³⁾

2. 한·일 자율준수제도의 주요 내용

1)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주요 내용

(1)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필수요소

일본은 2009년 10월 16일 개정된 외환법 제55조 10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출자 등²⁴⁾ 준수기준을 정하는 성령’ 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

20) 이희용 외 3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7.2, p.91.

21) 서민교,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2007, p.194.

22)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 내 ‘우리나라 제도 개요’ 참조.

23) 특정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이 시스템의 조회란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코드)를 입력하면 전략물자 분류번호가 게시되고, 종류와 크기에 따른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4) ‘수출자 등’이란 외환법 제2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출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를 말한다.

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전략물자 수출자의 경우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기업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수출관리 사내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도 수출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2010년 4월 1일 이후 수출관리 내부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취급하지 않는 일본의 수출업체라도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책임자를 두고, 최신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수출업체는 자율준수제도에 준하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을 한 기업의 자율준수제도가 다음 <표 2>의 11가지 필수운영요소를 구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수출관리 내부규정의 신고에 대해’ 고시와 ‘외환법 등 준수사항(별지 1)’ 고시의 기본적 사항과 개별 사항(8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최신의 법령·제도에 근거하는 내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등 준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율준수제도에서는 감사, 연수, 문서 보존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수출자 등 준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2>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필수요소

특정중요화물 등의 수출자 ²⁵⁾	일반 수출자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① 판정책임자 선임
② 관련 법령 숙지	② 관련 법령 숙지
③ 대표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전략물자 수출자
④ 수출관리체제 구축	③ 대표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⑤ 판정절차 제정	④ 수출관리체제 구축
⑥ 용도 수요자 확인 절차 제정 및 실시	⑤ 판정절차 제정
⑦ 화물 출하관리	⑥ 용도 수요자 확인 절차 제정 및 실시
⑧ 내부감사	⑦ 화물 출하관리
⑨ 연수	⑪ 위반 시 보고 및 재발 방지 조치
⑩ 문서보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⑪ 위반 시 보고 및 재발 방지 조치	상기 모든 요소의 의무 실시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드스', p.110. 재정리.

25) '특정 중요화물 등 관련 수출자 등'이란 특정 중요화물 등을 특정국 또는 특정국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행하거나, 외환법 제48조 제1항의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수출관리 내부규정은 수출이나 기술 제공에 관한 일련의 수속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환법 등의 안전보장무역관리 관련 법령의 위반을 미리 막기 위한 내부규정이다. 수출자 등이 스스로 정하는 조직 내부의 규정으로서, 어디까지나 자주 관리를 행하기 위한 임의의 것이다.

수출관리 내부규정을 경제산업성 대신에게 신고하는 경우, 먼저 기업 내부의 검토 단계에서 경제산업성의 무역경제협력국 내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 검사관실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자 등이 작성한 수출관리 내부규정이 ‘외환법 등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적절한 내부규정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출관리 내부규정 수리표가 발급된다. 수출관리 내부규정 수리표가 발급되는 수출자 등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수출관리 내부규정의 확실한 실시’ 고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자 등 개요, 자기관리 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2)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주요 내용

(1)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필수요소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기업의 자율준수제도가 다음 <표 3>의 10가지 필요운영 요소를 구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표 3> 자율준수제도 운영 필수요소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기구의 장 선임 및 위원회 설치
2. 자율수출관리규정 작성	관리규정 작성
3. 전략물자 심사 절차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4. 출하관리	물품과 서류 등의 일치 여부/허가 취득 여부 파악
5. 감사	정기/비정기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6. 교육	교육 담당자 지정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
7. 문서 관리	거래심사 및 체제 운영에 관한 제반 문서 관리
8. 자회사 및 관련 회사 등의 지도	해외 자회사, 주요 거래업체 등의 지도
9. 보고	효율적 보고 체계 구축
10. 벌칙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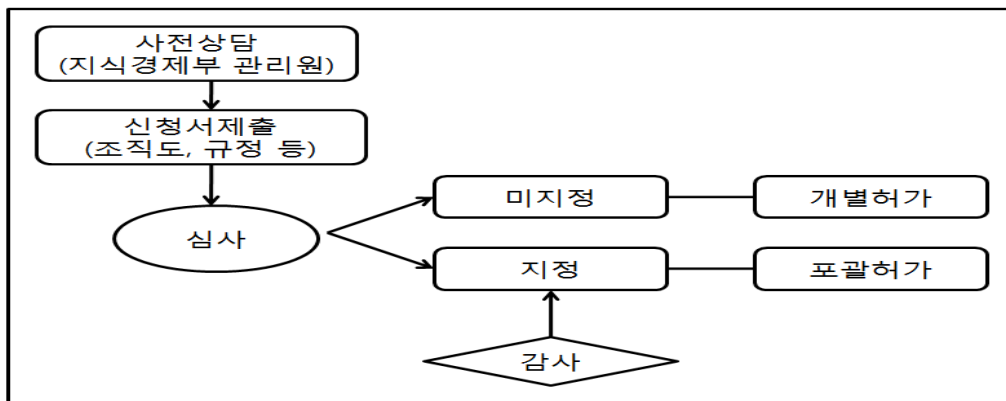
자료: 상동, p.62, 재정리.

기업의 수출관리기구는 사내의 수출관리 규정과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하며, 수출입의 최종적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준수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임직원의 교육 및 훈련, 위반자에 대한 징계, 자회사 및 관련 회사들에게 자율준수제도와 수출규정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규칙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빈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이상 실시하여 수출관리 규정, 회사절차, 정부의 정책동향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이 되면 연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절차

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리원과 사전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²⁶⁾의 지정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진행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승인된 기업체는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2007,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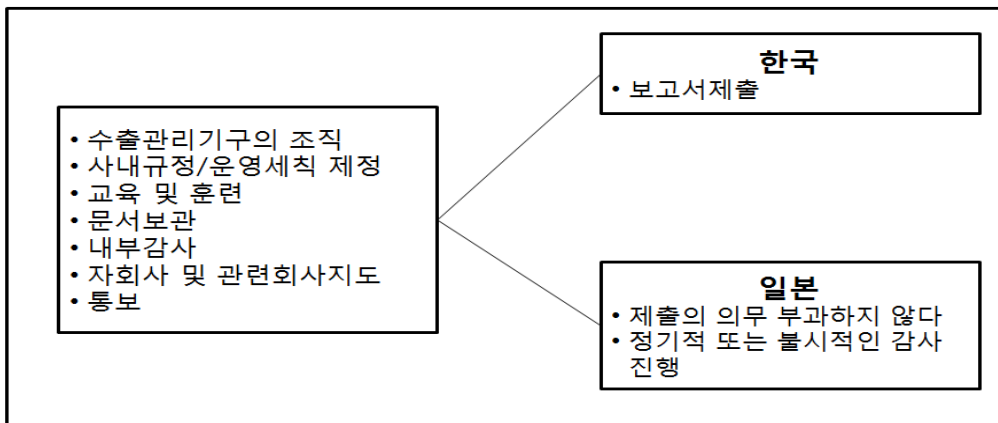
[그림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절차

3) 한·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필수요건 비교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필수요건을 살펴보면, 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사내규

26)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함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 자율준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5조 참조.

정/운영세칙 제정, 교육 및 훈련, 문서 보관, 내부 감사, 자회사 및 관련 회사 지도, 통보 등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해 일본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대신 정기적 또는 불시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그림 3] 참조).



자료: 반혜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의 자율준수제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p.75, 재정리.

[그림 3] 한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필수요건 비교

또한 수출심사요건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심사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절차흐름도, 기타 등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별도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이 전용위험 심사 위주인데 반해 한국은 상황허가 심사라는 차이가 있다(<표 4> 참조).

<표 4> 한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심사요건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소관부서	지식경제부	경제산업성
수출심사	통제품목 심사	
	DPL 심사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심사	
	국가 심사	
	상황허가 심사	전용위험 심사(red flag)
	통지 확인	
	물류 심사	
심사도구		체크리스트 3개, 표 1개, 절차흐름도 2개

자료: 상동, p.76.

3. 한·일 자율준수제도의 운영 현황

1) 일본의 자율준수제도 현황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한 업체수는 2011년 10월 7일 기준으로 563개사이며, 공표되지 않는 자율준수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1,600개사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율준수제도의 강화를 위해 4가지 집행 단계를 도입하였다. 첫째, 수출통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두 배로 높였다. 둘째, 'End-User List'²⁸⁾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셋째, 2009년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을 개정하면서(2010년 4월 발효) 일본 기업들이 반드시 자율준수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2007년부터 수출통제법 위반자의 실명과 위반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된 '수출자 등 준수기준'에서는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량과과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물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신뢰도 향상 및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고자 1.1억엔을 들여 민간 위탁사업을 실시하였다.²⁹⁾

이러한 민간 위탁사업은 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를 필두로 한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첫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상담 및 전문가 파견이다. 신규 개설한 중소기업수출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관리체제 구축 및 강화 관련 조언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조사 분석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모범사례, 표준사례 등을 수집하여 공통사항 및 공통과제 등을 분석, 검토하고, 중소기업이 자율준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정리 및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셋째, 일본기계수출조합(JMCTI)이 전국의 관련 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장무역관리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32회에 걸쳐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자 등 준수기준'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

27) 전략물자관리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2011, p.15.

28) 수출거래 시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국의 우려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리스트를 말한다.

29) 정하정,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개정 동향 및 한일 협력 현황", 전략물자 Focus 4호, 2011.

2)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운영 현황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령³⁰⁾에 의거하여 사내 자율준수제도를 갖추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004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4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2011년 10월까지 지정 받은 기업 수는 총 148개사에 달한다(<표 6> 참조).

<표 6>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추이(2011년 10월 현재)

(단위: 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4	7	31	64	98	130	148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 자료.

그 동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동향을 보면, 종전에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지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중견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표 7> 참조). 특히 국내에 소재한 독일, 미국계 등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통해 국내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외국계 기업이 전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7>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기업 현황(2010년 11월 현재)

(단위: 개)

제조업(105)		도·소매업(14)		운수업(5)		합계(124)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47	58	6	8	1	4	54	70

자료: 주형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지원 방향”, 전략물자 Focus 3호, p.47.

30) 대외무역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 내지 65조 참조.

3) 한·일 자율준수제도의 운영 현황 비교

일본의 경우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 10월말 현재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이 저조한 이유는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율준수제도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자율준수제도를 신고제로 시행하는 반면, 한국은 심사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민간 위탁사업을 한국에서도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1)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제도 지원

일본은 기업이 수출관리 내부규정을 경제산업성에 신고하면 다양한 지원과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자율준수제도를 신고할 때 수출자 등의 담당자 메일 주소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 개정이나 설명회 개최 정보 등의 새로운 정보를 그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외환법 관련 법령 등의 변화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율준수제도를 신고하고 경제산업성 내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에 사전 상담을 하면 업종, 업태 등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당자는 ‘수출자 등 준수기준’에 부합하는 내부규정의 제정이 가능하고, 수출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설명회에 매년 참가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 포괄허가의 취득이 가능하다. 즉 개별허가를 취득하는 일 없이 수출자 등의 자율적인 관리 하에서 일정 범위의 리스트 규제품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출하거나 기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우선 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개별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공표를 희망하는 수출자 등은 안전보장무역관리 홈페이지 상에서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정비한 수출자 등으로 공표됨으로써 자율준수관리제도를 정비한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라는 대외적인 홍보가 가능해진다.

2) 한국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한국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게 되어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를 받을 때 특례가 주어진다.

개별수출허가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한 기업은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 후 7일 이내로 첨부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나누어진다. 먼저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가’³¹⁾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권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특정포괄수출허가는 ‘나’³²⁾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한 기업은 일반포괄수출허가를 통해 ‘가’ 지역으로 수출 시 1회 허가로 3년 이내 반복 수출이 가능하고, 특정포괄수출허가일 경우는 ‘나’ 지역으로 수출 시 1회 허가로 2년 이내 반복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위반 시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행정제재에 대해 경감이 가능하고,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시 허가실적이 있는 업체가 동일품목을 동일수하인에게 보내는 경우 첨부서류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보다 간소한 절차로 수출이 가능하다.

31) ‘가’ 지역은 전략물자 관련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말하며,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29개국이다.

32) ‘나’ 지역은 바세나르체제(WA) 이외의 국가로서, 위의 ‘가’ 지역에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등을 포함한 39개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3) 한·일 정부의 자율준수제도 지원 비교

일본 기업이 수출관리 내부규정을 경제산업성에 신고할 때 수출자 등의 담당자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새로운 정보를 그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때 이를 쉽고 편하게 즉각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서비스는 일본보다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본과는 달리 담당자가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서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가 적은 만큼 기본적인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에서의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할 때 포괄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제도를 정비한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라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안전보장무역관리 홈페이지 상에 공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표 기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IV.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한국의 수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한 제품이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자율준수제도를 시행 중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의 수는 일본에 비하면 1/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내 기업에서의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기업의 개선과제

1)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 인식 제고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기업환경 자체가 규제 일변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그 영향으로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 및 인적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의 비용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몰이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기술 보호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이 수출을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술 보호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모든 구성원이 자율준수제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내규정에 입각하여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자율준수제도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 확대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더불어 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을 실무기관으로 하여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사전 판정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준수제도 확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은 전자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통제품목 판정 지원 도구, 전자적 수출허가 신청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홈페이지 중에서는 가장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들의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법수출 사례의 대외적인 공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위법수출 기업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상에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법수출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일본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체계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 내부의 자율준수제도 구축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략물자 판정기관이 산업기술진흥협회,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허가기관도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 일본에 비해 복잡하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산망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정부기관과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우려거래자 정보를 검색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일본의 경우 검색형식이 아니라 모두 공개하여 기업이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정부-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관련 한일 간 협력방안 모색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양국에서 시행 중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특히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서로 벤치마킹하거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전자, 통신, 화학, 기계 등의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핵 발전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자율준수제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V. 결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기업들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래 리스크의 예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그 실천을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코콤(COCOM) 위반사건으로 큰 경험을 한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필수요건을 살펴보면, 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사내규정/운영세칙 제정, 교육 및 훈련, 문서 보관, 내부 감사, 자회사 및 관련 회사 지도, 통보 등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해 일본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대신 정기적 또는 불시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출심사요건의 경우 일본은 수출심사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절차흐름도, 기타 등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별도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이 전용위험 심사 위주인데 반해 한국은 상황허가 심사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자율준수제도의 내용 및 운용상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자율준수제도를 조속히 정착 및 발전시키고, 선진 수출통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자율준수제도를 수출규제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손실과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보장무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 활동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에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자율준수제도 발전 및 정착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에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호,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2004.
-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2005.
-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박홍규, “경쟁법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05.
- 반혜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의 자율준수제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7.
- 서민교,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7.
- 심영섭,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이상진·윤남권,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 이석기,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동향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5.
-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 이현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9.
- 이희용·강현재·김귀옥·여택동,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와 기업의 대응”, 2004.
- _____, “일본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모델”, 2005.
- _____,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2007.
- _____, “2009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드스 개정(판)”, 2009.
- _____, 통계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2011.

- 정하정,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개정 동향 및 한일 협력 현황”, 전략물자 Focus 4호, 2011.
- 주현태, “2010년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지원 방향”, 전략물자 Focus 3호, 2010.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별 대일무역수지와 시사”, 일본지식리포트, 2011.
- 經濟産業省, “輸出者等遵守基準等の導入に向けて”, 2010.
- 經濟産業省, “輸出管理内部規程(C P) 及び輸出者等概要・自己管理チェックリスト(C L) ”, 2010.
- 經濟産業省 貿易管理部, “法令遵守のポイント”, 2010.
- 經濟産業省 貿易管理部, “安全保障貿易に係る機微技術管理ガイダンス”, 2010.
- 經濟産業省 貿易經濟協力局 貿易管理部 安全保障貿易検査官室, “Q & A (包括許可取扱要領等の改正に伴う輸出管理内部規程 (C P) 及び輸出者等概要・自己管理チェックリスト (C L) 関連の対応等) ”, 2011.
-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CISTEC), “安全保障輸出管理調査報告書 制度・手續編”, 2011.
- _____, “安全保障輸出管理調査報告書 貨物・技術編”, 2011.
-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Compliance Programs: Issues for A Roundtable Discuss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of the OECD on Oct. 23, 2000.
- _____, “Corporate trade practices compliance programs”, November 2005.
- _____, “Protocols for Reviewing and Assessing the Adequa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mpliance Programs”, May 2005.
- CISTEC, “Overview of Japan’s Export Controls”, February 2010.
- Hyun-Bin Hong, “A Stud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needs in the control system of the strategic items”, Graduated School, Korea University, 2011.
- Jung-Min Kang, “Current Status of the South Korean Export Control Systems”, November 2006.
- KOSTI, “2010 Annual Report on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2010.
- Kyung-Shin Choi,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actices in Korea”, June 2010.
- METI,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September 2007.
- _____, “Overview of Export Control System in Japan”, October 2007.
- _____, “Performing Export Control Assignment of Tasks among Authorities and Industry”, June 2009.

Min-Kyo Seo, "A Study on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Items",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2007

MKE, "Export Control in Korea", December 2009.

OECD, "Compliance Programs: Issues for a Roundtable Discussion-Australia", 2000.10.17.

Tatsuya Kanemitsu, "An introduction to Japanese export controls", WorldECR, April 2011.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원 <http://www.kosti.or.kr/kosti/Main.do>

일본 경제산업성(METI) <http://www.meti.go.jp/>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http://www.cistec.or.jp/>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Shim, Sang-Ryul* · Shao, Dan** · Joo, E-Wha***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s, missiles) and technologies and goods related to conventional weapons or dual-use items.

Compliance Program (CP) in Korea or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in Japan refers to a company's internal system or rules to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and is to prevent the unintentional illegal export of strategic items.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iance Program (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very similar legal frameworks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ctual procedures, classification service, supporting system, export license, sanctions for illegal exporters, etc.

Korea should take more active and customer-oriented measures to promote the Compliance Program (CP) into Korean export companies for better awareness and positive attitude, practical information and education, smooth government-firm communication,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tc.

Key words: Export Control, Strategic Items, Compliance Program (CP), WMD, ABCM

* Professor, Dept. of Northeast Asian Trade, Kwangwoon University

** Ph.D.cours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 Master's degree cours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